

농진공,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 접수

✎ 김진영 뉴스룸 국장 | ⌚ 승인 2026.03.06 07:44

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최대 10년 간 해당 농지 등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추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매도대상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매도조건

매도가격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매도상한 60,000원/㎡ ~ 113,000원/㎡)
매도한도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
임차기간	7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연간임차료	(농지) 관행임차료 수준 (시설물) 매도가격의 1%

환매가격

농지	환매시점에 ①, ② 중 선택 ① 매도가격에 정책요율*을 적용한 금액 ② 감정평가금액 *최초 매도 시 고정요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요율 선택
농업용시설	당초매도가격

* 일시납 또는 10년, 10년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 접수를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를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임차(최장10년)하여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7년에서 10년 동안 해당 농업인에게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 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영농으로 인한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이 외에도 해당 지면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께선 관할 지사 담당자와 대면상담 및 유선(052-290-5302)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오정은 기자



김진영 뉴스룸 국장 cedar@iusm.co.kr